감사 규정 중 개정 규정

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- 감사실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획처장이 감사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을 삭제함 (제6조제3항)

2. 개정 규정

감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임명하며, 기획처장이 겸임할 수 있다.”를 “임명한다.”로 한다.

부칙(2023. 5. 12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감사 규정 중 개정 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사유및내용
제6조(감사실) ①~② (생략) ③ 감사실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<u>임명하며, 기획처장이 겸임할 수 있다.</u> ④~⑥ (생략)	제6조(감사실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…… ……<u>임명한다.</u> ④~⑥ (현행과 같음) 부칙(2023. 5. 12. 개정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*기획처장이 감사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을 삭제